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857
----------	-----

제출년월일 : 2004. 4. 16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1. 제 정 이 유

국내최초의 공룡발자국 화석 발견지이며, 세계3대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의 학술적 가치와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고성외의 우수한 자연문화유산을 지역특화화 시키기 위해, 국내 최초의 자연사 세계엑스포로서 고성군에서 범국제적인 국제행사인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 요 내 용

- 가. 법인의 명칭 및 기구 (안 제2조)
- 나. 법인의 재산 (안 제4조)
- 다. 법인의 운영비 지원 (안 제5조)
- 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보고 및 검사 (안 제7조)
- 마. 공무원의 파견근무 (안 제8조)

3. 참 고 사 항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감독)
- 지방재정법 제14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 지방공무원법 제30조 4(파견근무)

4. 입 법 예 고

- 기간 : 2004. 3. 9. ~ 2004. 3. 28. (20일간)
- (특이사항 없음)

5. 본 문 : 붙임과 같음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이하 “엑스포”라 한다)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의 명칭 및 기구) ①고성군이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②재단에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 재단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제3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엑스포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엑스포 주제관 및 전시시설 설치와 부지조성
3. 엑스포 운영과 자원조달 및 집행
4. 엑스포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5. 기타 엑스포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법인의 재산)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출연금으로 한다.

1. 고성군의 출연금
2.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
3. 기타 출연을 원하는 후원인 등의 출연금

제5조 (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재단의 운영비 및 엑스포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제4조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공유재산의 대부)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7조 (보고, 검사 등) ①군수는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공무원 파견) ①군수는 엑스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직원은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9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성군에 귀속된다.

제10조 (공공시설의 사용) 군수는 엑스포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공공시설을 재단에 위탁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재단이 해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참 고 사 항

◀ 민 법 ▶

○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 (설립허가기준) 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한다.

②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징수,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공익법인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3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 또는 무상대부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4조 (감독) ①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주무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주무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익을 목적사업 이외에 사용할 때
2. 당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 지방재정법 ▶

제14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 ▶

제4조(보조대상)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공무원법 ▶

제30조의4 (파견근무) ①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파견권자는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을 지체없이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단체로부터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④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의 그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기간중의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